

국가연구과제, 국책과제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적발 시 행정적 제재처분 기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행정적 제제처분 기준

3)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¹⁾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다)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既)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 ¹⁾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나.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다. 협약 당시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 이후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착오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전액
라. 투자연계 사업에서 체결된 투자계약(또는 확약)이 사실상 무효(가장납입, 부정한 이익 요구, 약속·취득 등)이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1) 제3자 부당개입 사례

-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가 계약한 경우
-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 제3자가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계약분쟁,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